

##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낙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낙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양 양 군 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 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낙시 어선업자·선원(이하“어선업자”라 한다)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낙시어선의 낙시어선업자 및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영업시간)** 낙시어선업 영업시간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

**제4조(영업구역)** 낙시어선의 영업구역은 강원도 관할 수역 해안선으로부터 연안 7마일 이내 수역으로 한다.

**제5조(낙시어선업자 준수사항)** 낙시어선업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해사안전법, 어촌·어항법, 항만법, 개항질서법 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에서는 낚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갯바위, 간출암, 무인도서 등에 승객을 하선시키는 행위를 금한다.
3. 낚시어선업자는 출항 전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 전원에게 영업종료 시까지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객이 출항 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4. 충돌, 좌초 또는 그 밖에 승객의 위급한 상황 및 해상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양경비안전서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고, 인명구조 활동 등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려는 낚시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자 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6.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 전 항해·통신·기관·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제6조(낚시어선승객 준수사항)** 낚시어선의 승객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항 시부터 입항 할 때까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낚시어선업자가 요구하는 “승선자 명부” 작성 시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거짓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낚시어선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선장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한다.
5. 수산물의 불법 포획·채취 행위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방류한 치어를 포획하는 행위를 금한다.

6. 해상에 유류, 분뇨, 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를 금한다.
7. 낚시어선에서 음주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동을 금한다.
8.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선장의 지시 및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7조(기타 준수사항)** ① 낚시어선업자는 출항 전에 제6조에 의한 승객의 준수사항 및 선장의 지도·요구사항을 따라야 함을 교육시켜야 한다.

② 낚시어선업자는 다른 시·군의 관할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할 시장·군수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제1조에 의한 고시 시행과 동시에 양양군 고시 제2013-130호(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변경 고시)는 폐지한다.